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5-5
----------	--------

제출연월일	2005. 3. 3
제출자	사천시장

1. 의결주문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승합자동차로 분류되던 7~10인승 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면서 자동차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납세자의 지방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감면내용을 반영 하는 한편, 시민이 이해하기 힘든 법령 제명의 표기방법을 개선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7~10인승 비영업용승용자동차(2000년 12월 31일이전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형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에 대하여는 2007년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되 과세할 세액이 종전의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함

-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
- 전방조종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경감

나. 법령 제명 표기방법 개선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 고 사 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나. 합 의 : 기획담당관실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05. 2. 1 ~ 2005. 2. 15)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천시세 감면 조례

제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조같은항 제1호 및 같은조 제3항제1호·제3호 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 제1호 및 같은조 제2항제1호·같은조같은항 제3호 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5조 중 “민법”을 “「민법」”으로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한다.

제6조 중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하고, 같은조 제2호 중 “한국노동교육원법”을 “「한국노동교육원법」”으로 하며, 같은조 제5호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같은조 제6호 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같은조 제7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육성법」”으로 한다.

제8조 중 “교육기본법”을 “「교육기본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제3호 중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를 “「경상남도문화재보호 조례」”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 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제2호 중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을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으로 제4호 중 “오지개발촉진법”을 “「오지개발촉진법」”으로 하며, 같은조 제2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임대주택법”을 각각 “「임대주택법」”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 중 “임대주택법시행령”을 “「임대주택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조 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으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으로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하며, 같은조 제3항 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13조 중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4조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 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다만,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조제1항중 “철도법”을 “「철도법」”으로 하며,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16조본문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17조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같은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18조 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으로 하고, 같

은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19조 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0조 중 “화물유통촉진법”을 “「화물유통촉진법」”으로 한다.

제21조 중 “전쟁기념사업회법”을 “「전쟁기념사업회법」”으로 한다.

제22조본문 및 각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23조 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하고, 같은조 중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5조제1항본문 및 각호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각각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하고, 같은조제2항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을 각각 “「지방세법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6조 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27조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30조 및 제3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4조의2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14조의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다만,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관 계 법 령 발 취

지 방 세 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998.12.31>

제196조의5(과세표준과 세액)■자동차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3.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자 동 차 안 전 기 준 에 관 한 규 칙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7.21, 1997.1.17, 1997.8.25, 1999.2.19, 2001.4.28, 2004.8.6>

23. "전방조종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자동차를 말한다.